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(법률 제7846호, 2006. 1. 11공포, 2006. 1. 11시행)중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이 20세 이상 주민에서 19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을 20세 이상 주민에서 19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
나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다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라. 기타참고 : 2006. 3. 17 클린경북실현 공직자 워크숍 자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" 를 "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" 로 한다.

제2조중 " 20세" 를 " 19세"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**20세**이상 200명으로 한다.	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19세**----------.	주민감사 청구연령 조정